

대한민국 산림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산림유역관리청 간 산림협력에 관한 양해각서

대한민국 산림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산림유역관리청 간 (이하 “양측” 이라 함)은 양국의 발전과정에 산림의 중요도를 인식하기에 산림분야에서 상호혜택이 가능한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을 제공하면서,

다음과 같이 양해하였다.

제 1 조

목적

양측은 양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산림협력을 개발하는데 지원하고 과학적, 기술적, 경제적 관점 및 훈련분야에 관련된 협력이 될 수 있으며, 또한 양측의 교류를 촉진하고자 한다.

제 2 조

협력 분야

양측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개발하고자 한다:

1. 신규조림 및 재조림;
2. 산림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협력;
3. 사방 및 사막화방지 방지·관리;
4. 산불 방지·관리·모니터링;
5. 산림병해충 종합관리;
6. 유역관리·유출통제;
7. 다목적 임업;
8. 산림공원 관리;
9. 상호 합의한 기타 협력분야.

제 3 조

협력 활동

본 양해각서의 목적을 이루고자, 양측은 다음의 활동형태로 산림협력을 이행하고자 한다:

1. 관련 정보, 자료, 서류, 연구결과 교류
2. 대표단, 전문가, 연수단 교류
3. 정보와 경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워크샵, 연수, 세미나, 포럼, 그외 기타 활동을 구성
4. 상호 합의한 기타 협력활동

본 양해각서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양측은 상호 관심분야의 특정 안전에 대한 협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제 4 조

이행

양측은 협의사항 후속조치를 관리하고 본 양해각서 이행과 실현을 감독할 담당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
1. 이란이슬람공화국 산림유역관리청 국제협력국
주소: Artesh Expressway, Shemiran, Tehran, IR.Iran (19557 6113)
전화번호: +98 21 2219 4039
이메일: international@frw.org.ir
2. 대한민국 산림청 해리자원개발담당관실
주소: 대전 서구 청사로 189
전화번호: +82 -42 481 8878
이메일: hearree@korea.kr

제 5 조

기밀 사항

양측은 현 협력관계에서 양측으로부터 얻은 정보와 노하우를 공개하지 않는다. 협력 결과에 대한 활용은 양측의 상호동의에 의해 이루어 질 것이다.

제 6 조

재정 사항

본 양해각서 하 협력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양측의 상호협의로 결정된다. 양자 회의 및 방문을 위한 국제여행 경비는 기본적으로 방문국에서 부담하고, 주최국에서는 현지숙박 및 국내 체류 전반사항을 제공한다.

제 7 조

분쟁 조정

본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측간의 모든 분쟁은 양측의 우호적인 교섭과 외교채널을 통해 해결한다.

제 8 조

개정

본 양해각서는 양측의 합의문서를 통해 개정 및 보완될 수 있다. 개정사항은 양측이 서명한 일로부터 발효된다.

제 9 조

발효 및 만료

본 양해각서는 서명한 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5년간 유효하며, 이후에는 어느 한 측이 각 기관 만료 6개월 전에, 본 양해각서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, 본 양해각서는 2년씩 자동 연장된다.

본 양해각서는 영어, 한국어, 아랍어로 원본 각 2부씩 체결되었다.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.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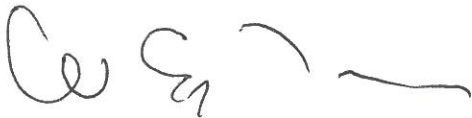
2016년 이슬람력 1395년 ___월 ___일에 테헤란에서 서명되었다.

대한민국

이란이슬람공화국

산림청 측

산림유역관리청 측



신원섭 청장

Khodakaram Jalali 청장